

의안번호	2126616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4. 4. 18.
추계번호	24C0221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의2제5항(손해배상책임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	임의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의2제5항(손해배상책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(안 제33조의2제5항)

-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33조제2항¹⁾이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

1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표시의무)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,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·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-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해설서를 2024년 2월 19일 배포하였고, 2024년 3월 22일부터 게임물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 여부 및 확률 정보의 거짓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
[표]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사업 현황(2024년)

구분	내용
해설서 배포	- 배포시기: 2024. 2. 19 - 배포방법: 문제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- 내용: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,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, 표시방법 등 안내
모니터링단 운영	- 구성인원: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24명 - 운영기간: 2024. 3. 22부터 계속 - 주요업무: 확률정보 표시 관련 위반사항 확인 및 자문단 검증 확률조작 의심사례는 공정위 업무협조 통한 조사 병행 - 2024년 예산: 1,688백만원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게임물 확률정보 표시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 정부는 게임물 확률 정보 표시 위반과 관련한 피해구제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향후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여부 및 운영 규모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